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본 예산안은 2024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I. 제안이유

- 2025년도 평창군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

II. 주요내용

- 2025년도 평창군 예산안의 총규모는 570,817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50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05백만원이 증가된 515,987백만원, 특별회계는 41,413백만원이 감소된 54,829백만원 임.

○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42,655백만원, 세외수입 22,479백만원, 지방교부세 283,423백만원, 조정교부금 8,58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51,720백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128백만원 임.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70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6,221백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8,907백만원 임.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404,552백만원(예비비 7,580백만원 포함), 재무활동 33,83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77,60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53,301백만원, 재무활동 15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373백만원 임.

1)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합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III. 예산개요

1. 회계별 예산규모

○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70,817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6.32%인 38,508백만원이

감액된 규모임.

- 일반회계는 515,987백만원으로 2,905백만원(0.57%)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54,829백만원으로 41,413백만원($\triangle 43.03\%$)이 감액 편성되었음.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570,817	100.00	609,325	-38,508	-6.32
일반회계	515,987	90.39	513,082	2,905	0.57
특별회계	54,829	9.61	96,242	-41,413	-43.03
공기업특별회계	23,528	4.12	19,777	3,751	18.9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528	4.12	19,777	3,751	18.96
기타특별회계	31,301	5.48	76,465	-45,164	-59.0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74	0.07	545	-171	-31.3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1	0.02	141	0	0.0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280	0.22	1,004	276	27.51
수질개선특별회계	29,506	5.17	74,775	-45,269	-60.54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0.57%인 2,905백만원이 증액된 515,987백만원 입.

- 자체수입은 65,134백만원으로
 - 지방세수입 69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18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전수입은 443,725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17,866백만원, 조정교부금은 1,08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0,942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128,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515,987	100.00	513,082	2,905	0.57
자체수입	소 계	65,134	12.62	60,255	4,880	-2.29
	지방세수입	42,655	8.18	41,960	696	1.66
	세외수입	22,479	3.57	18,295	4,184	22.87
이전수입	소 계	443,725	86.00	445,700	-1,975	-4.87
	지방교부세	283,424	54.93	265,537	17,886	6.74
	조정교부금등	8,582	1.66	7,501	1,081	14.41
	보조금	151,720	29.40	172,662	-20,942	-12.1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28	1.38	7,128	0	0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0.57%인 2,905백만원이 증액된 515,987백만원 임.
- 정책사업비 7,43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7,080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55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515,987	100.00	513,082	2,905	0.57
정 책 사 업	404,552	78.40	397,121	7,431	1.87
재 무 활 동	33,832	6.56	40,912	-7,080	-17.31
행정운영경비	77,603	15.04	75,049	2,554	3.40

- 기능별 세출예산을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볼 때

- 일반공공행정은 9,314백만원이 감액된 28,002백만원,
- 공공질서및안전은 8,386백만원이 감액된 25,922백만원
- 교육은 1,449백만원이 증액된 8,953백만원
- 문화및관광은 4,227백만원이 증액된 41,872백만원
- 환경은 7,277백만원이 감액된 41,888백만원
- 사회복지자는 8,691백만원이 증액된 115,522백만원
- 보건은 2,989백만원이 증액된 11,919백만원
- 농림해양수산은 2,623백만원이 증액된 101,168백만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504백만원이 증액된 5,766백만원
- 교통 및 물류는 11,953백만원이 증액된 26,295백만원
- 국토및지역개발은 6,109백만원이 감액된 23,496백만원
- 예비비는 1,000백만원이 감액된 7,580백만원
- 기타는 2,554백만원이 증액된 77,603백만원으로 편성됨.

《기능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515,987	100	513,082	2,905	0.57
일반공행정	28,002	5.43	37,317	-9,314	-24.96
공공질서및안전	25,922	5.02	34,308	-8,386	-24.44
교육	8,953	1.74	7,504	1,449	19.31
문화및관광	41,872	8.11	37,645	4,227	11.23
환경	41,888	8.12	49,165	-7,277	-14.80
사회복지	115,522	22.39	106,831	8,691	8.14
보건	11,919	2.31	8,930	2,989	33.47
농림해양수산	101,168	19.61	98,545	2,623	2.6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766	1.12	5,262	504	9.58
교통및물류	26,295	5.10	14,342	11,953	83.35
국토및지역개발	23,496	4.55	29,605	-6,109	-20.63
예비비	7,580	1.47	8,580	-1,000	-11.65
기타	77,603	15.04	75,049	2,554	3.40

○ 조직별 세출예산은

- 가족복지과 81,372백만원(15.77%), 행정과 79,813백만원(15.47%), 농업기술센터 74,190백만원(14.38%),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 전년도예산액과 대비하여
 - 도시과의 예산증가폭이 가장 크며 관광정책과, 올림픽체육과 순으로 증가하였음.
 - 장평 고령자복지주택 사업비 분담금 반영으로 도시과의 예산 증가 폭이 123.67%로 가장 크며,
 - 관광정책과는 관광문화재단 출연금 등으로 전년 대비 64.42% 증가하였음.
 - 올림픽체육과는 용평파크골프장 확장사업, 각종 체육시설 공사비 등으로 전년 대비 56.12% 증가하였음.

《조직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515,987	100.00 %	513,082	2,905	0.57 %
본 청	404,969	78.48 %	416,195	-11,226	-2.70 %
행정 담당관	79,813	15.47 %	77,817	1,995	2.56 %
기획재정국	132,662	25.71 %	134,855	-2,193	-1.63 %
기획예산과	16,513	3.20 %	18,941	-2,428	-12.82 %
인재육성과	10,677	2.07 %	9,962	714	7.17 %
복지정책과	20,843	4.04 %	22,084	-1,241	-5.62 %
가족복지과	81,372	15.77 %	77,257	4,115	5.33 %
세정과	990	0.19 %	743	248	33.38 %
회계과	2,267	0.44 %	5,869	-3,601	-61.36 %
관광경제국	55,929	10.84 %	55,184	745	1.35 %
관광정책과	8,354	1.62 %	5,081	3,273	64.42 %
문화예술과	11,927	2.31 %	18,694	-6,767	-36.20 %
올림픽체육과	22,705	4.40 %	14,543	8,162	56.12 %
경제과	8,886	1.72 %	13,590	-4,704	-34.61 %
민원토지과	4,057	0.79 %	3,276	781	23.84 %
도시안전국	136,565	26.47 %	148,339	-11,773	-7.94 %
도시과	17,701	3.43 %	7,914	9,787	123.67 %
허가과	368	0.07 %	7,564	-7,196	-95.14 %
건설과	37,302	7.23 %	27,639	9,663	34.96 %
안전교통과	29,225	5.66 %	35,580	-6,356	-17.86 %
산림과	21,053	4.08 %	27,168	-6,115	-22.51 %
환경과	29,388	5.70 %	42,473	-13,085	-30.81 %
현안사업추진과	1,528	0.30 %	0	1,528	순증
직속기관	88,087	17.07 %	79,893	8,194	10.26 %
보건의료원	13,897	2.69 %	10,903	2,995	27.47 %
농업기술센터	74,190	14.38 %	68,991	5,199	7.54 %
의회사무과	1,225	0.24 %	946	279	29.48 %
상하수도사업소	15,841	3.07 %	10,646	5,194	48.79 %
읍 면	5,866	1.14 %	5,402	464	8.59 %

○ 성질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 인건비는 3,807백만원이 증액된 73,426백만원
- 물건비는 1,821백만원이 증액된 33,479백만원
- 경상이전은 18,562백만원이 증액된 218,535백만원
- 자본지출은 13,229백만원이 감액된 148,647백만원
- 보전재원은 전년도와 변동없이 2,315백만원
- 내부거래는 4,496백만원이 감액된 31,865백만원
- 예비비및기타는 3,560백만원이 감액된 7,720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성질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515,987	100.01	513,082	2,905	0.57
인 건 비	73,426	14.23	69,618	3,807	5.47
물 건 비	33,479	6.49	31,658	1,821	5.75
경 상 이 전	218,535	42.35	199,973	18,562	9.28
자 본 지 출	148,647	28.81	161,876	-13,229	-8.17
보 전 재 원	2,315	0.45	2,315	0	0.00
내 부 거 래	31,865	6.18	36,361	-4,496	-12.37
예비비및기타	7,720	1.50	11,280	-3,560	-31,56

3. 특별회계

-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829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1,413백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 공기업특별회계는 23,528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75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특별회계는 31,301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5,164백만원이 감액되었음.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54,829	100	96,242	-41,413	-43.03
공기업특별회계	23,528	42.91	19,777	3,751	18.9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528	42.91	19,777	3,751	18.96
기타특별회계	31,301	57.09	76,465	-45,164	-59.0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74	0.68	545	-171	-31.3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1	0.26	141	0	0.0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280	2.33	1,004	276	27.51
수질개선특별회계	29,506	53.81	74,775	-45,269	-60.54

4. 계속비사업

- 2025년도 계속비사업은 신규 1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3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1,410백만원 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23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합계	35개사업	601,410	222,179	140,396	39,186	199,649
1	평창에코랜드 조성	9,330	8,700	630	0	0
2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	9,650	6,250	1,400	2,000	0
3	평화 테마파크 조성	36,840	35,750	1,090	0	0
4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9,670	0	400	0	9,270
5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23,100	3,920	5,284	0	13,896
6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8,000	0	790	0	7,210
7	도로와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3단계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일원)	3,000	500	1,430	1,070	0
8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20,223	0	750	0	19,473
9	행복+학습센터 조성	18,600	8,990	5,110	0	4,500
10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20,745	5,873	5,516	4,000	5,356
11	차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8,846	0	1,800	1,000	26,046
12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3,900	0	200	1,850	1,850
13	대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100	16,318	4,684	3,000	3,098
14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31,261	9,214	11,885	6,162	4,000
15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5,000	14,680	9,200	3,000	8,120
16	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 비사업	5,200	252	3,464	1,484	0
17	송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 비사업	27,974	0	0	1,300	26,674
18	평창 치유의 숲 조성	5,500	3,900	1,600	0	0
19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500	4,100	1,400	0	0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23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20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	8,750	5,650	3,100	0	0
21	청옥산 은하수 신약관광 허브구축	15,000	5,500	1,875	0	7,625
22	신양삼 응복합 지원센터 조성	10,100	6,500	3,600	0	0
23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4,200	12,950	2,225	0	9,026
24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조성	11,000	9,700	1,300	0	0
25	평창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0,550	4,356	16,194	0	0
26	여민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27,937	4,165	23,772	0	0
27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13,425	2,013	3,235	8,177	0
28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9,617	1,694	17,620	303	0
29	히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25,998	1,086	1,713	951	22,248
30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	14,363	795	1,648	1,167	10,753
31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	6,001	803	327	1,022	3,849
32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373	0	158	1,200	2,015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9,100	31,000	0	1,500	6,600
34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12,920	3,680	1,200	0	8,040
35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	19,636	13,840	5,796	0	0

IV. 검토결과

1. 예산안 총규모

-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70,81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50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515,987백만원으로 2,905백만원(0.57%)이 증액 되었고,
 - 특별회계는 54,829백만원으로 41,413백만원($\triangle 43.03\%$)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15,98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세수입은 696백만원이 증액된 42,65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보통세는 679백만원이 증액된 42,655백만원, 지난년도수입은 17백만원이 증액된 851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은 4,184백만원이 증액된 22,47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경상적세외수입은 558백만원이 증액된 10,796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608백만원이 증액된 10,765백만원, 지방행정제제 · 부과금은 17백만원이 증액된 637백만원이 각각 편성됨.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예산액대비 17,886백만원이 증액된 283,424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16,032백만원이 증액된 268,569백만원, 부동산교부세는 6,854백만원이 증액된 14,854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160백만원이 감액된 5,00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조정교부금등은 1,081백만원이 증액된 8,58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보조금은 전년도예산액대비 20,942백만원이 감액된 151,720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2,336백만원이 감액된 112,926백만원, 시 · 도비보조금은 8,606백만원이 감액된 38,794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12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15,98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정책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7,431백만원이 증액된 404,552백만원
- 재무활동은 전년도 예산대비 7,080백만원이 감액된 33,832백만원
- 행정운영경비는 2,554백만원이 증액된 77,60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115,522백만원(22.39%)
농림해양수산 101,168백만원(19.61%)
기타 77,603백만원(15.04%)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 조직별 세출예산은

가족복지과 81,372백만원(15.77%)
행정과 79,813백만원(15.47%)
농업기술센터 74,190백만원(14.38%) 순으로 편성됨.

○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218,535백만원(42.35%)
자본지출 148,647백만원(28.81%)
인건비 73,426백만원(14.23%)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4. 특별회계 예산안

-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82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41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51백만원이 증액된 23,52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노동·수항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1백만원이 감액된 37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276백만원이 증액된 1,280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폐수처리시설 보수 등 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음,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45,269백만원이 감액된 29,50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봉평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 평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 하수관로 유지보수 등에 주로 편성되었음.

5.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79개사업 36,88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7개 사업 35,999백만원, 기금 2개 사업 88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예산액 대비 5,600백만원(17.90%)이 증액되었음.

《성인지 예산 총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9	36,882	31,282	5,600	17.90
일 반 회 계	77	35,999	30,182	5,816	19.27
기 타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2	884	1,100	△216	△19.64

- 조직별 편성 현황을 보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14개 부서 중 가족복지과 15,006백만원, 인재육성과 6,468백만원, 올림픽체육과 4,026백만원, 경제과 2,77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성인지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76.66%, 28,276백만원이 가족복지과를 포함한 4개 부서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53.16%)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군의 성평등 목표인 여성 취업률 제고 및 여성의 복지 욕구 충족에 맞는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성인지 예산 유형별 편성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사 업 별	사업 개수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9	36,882	31,282	3,592	12.9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	1,299	1,499	△200	△13.36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사업	42	24,468	27,367	△2,899	△10.59
자치단체특화사업	9	2,618	2,416	202	8.36
기타사업	19	8,497	0	8,497	순증

6. 계속비사업

-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35건으로, 기존사업 16건, 변경 18건, 신규 1건이며, 총사업비는 601,410백만원 임.
 - 신규 사업은 “송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7,974백만원이며, “대화 축구장 조성”은 도비 보조금이 당초 3년에서 2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에서 제외되었음.
 -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없음.
- 계속비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관리를 위하여 유용한 제도이나, 장기간 사업이 지속되어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철저한 사업계획수립을 통한 예산추계로 총사업비 증가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계속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25년	2026년	2027이후	비고
합계(1건)	27,974	1,300	14,000	12,674	
송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7,974	1,300	14,000	12,674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건수	총사업비	2023년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합계	38	601,410	222,179	140,396	39,186	199,649
일반회계	24	415,309	170,777	66,408	26,366	151,758
특별회계	14	186,101	51,402	73,988	12,820	47,891

7. 예산의 성과계획서

- 「지방재정법」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성과계획총괄은 3개국과 23개 부서의 전략목표에 따라 정책사업 목표는 77개, 성과지표수는 158개이고 단위사업은 184개임.
 -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시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 78개에 대한 지표수 158건에 대하여 성과 평가한 결과 성과 초과달성 28건, 달성 80건, 미달성 50건으로 달성률은 68.35%로 보고되었음.
 - 성과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과 연계한 성과지표 빨굴에 내실을 기하고 적합한 성과지표 빨굴 및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성 과 계 획			예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개수	성과지표수			
2025년	26	77	158	184	627,210	589,547
						37,662

8. 종합검토 의견

-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능별 예산규모는
 - 사회복지분야는 22.39%인 115,522백만원
 -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9.61%인 101,168백만원
 - 환경분야가 8.12%인 41,888백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15,987백만원으로
지방세(42,655백만원)와 세외수입(22,479백만원)을 합산한 재정자립도는 12.62%로
공무원 인건비(59,693백만원)가 자체수입의 9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100
※인건비 : 보수(101-01)+기타직보수(101-02)+공무직근로자보수(10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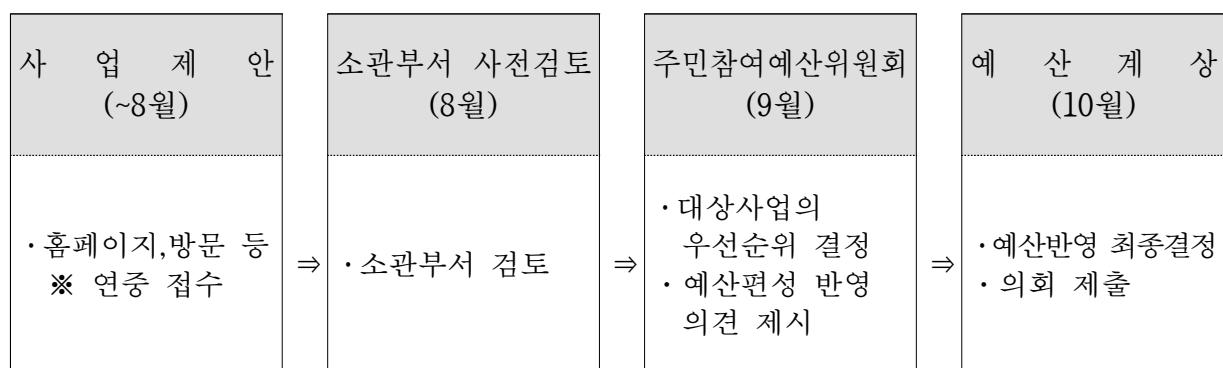
-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합한 재정자주도는 69.21%로 나타남.
전년도(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주도는 64.96%로 전년대비
4.25% 증가하였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100
※자체수입 : 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 2025년도 예산안은 총 515,987백만원으로 자체사업(179,985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4.88%로 나타났으며, 보조사업(224,567백만원)은
43.52%를 차지하고 있음.
행정운영 경비 예산액(77,603백만원)의 비율은 15.04%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7,580백만원으로 일반예비비 4,000백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58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
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78%로 한도 내 적정규모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편성규모 제한없음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법령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예산액 총액(570,817백만원)의 60.86%(347,403백만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재량지출은 39.14%(223,414백원)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액은 14건 사업에 260억원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으며, 상환하여야 하는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전통시장활성화, 횡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있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제안사업 대상 요건을 사업비 1억 원 이하의 소액 사업으로 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기획예산과의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시 3억원 이하의 소규모 단년도 사업으로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에는 주민 참여 예산학교 교육 및 홍보를 위해 5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주민제안사업 예산편성 절차》



- 가족복지과 소관 「장난감도서관 운영 위탁금」(예산안 p271, 설명자료 p506)은 2024년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 4월 개소를 목표로 하여 운영 위탁금 80백만원을 편성한 사업이며 「어린이 실내놀이터 운영 위탁금」(예산안 p272, 설명자료 p511) 중 「HAPPY700 상상놀이터 운영 위탁금」은 하반기 현지확인 사업장으로 내년 2월 개관을 위해 민간위탁금 166백만원을 편성한 사업임.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HAPPY700 상상놀이터의 경우, 문화복지센터 1층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위탁운영에 대해 2022년 11월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았으나 기존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증축한 HAPPY700 상상놀이터를 동일 시설로 간주하여 현 수탁자에게 위탁할 시에도,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고,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 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
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대법
원 2011. 2. 10. 선고 2010후11 판결 참조)가 있고,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질의 회신을 종합해 볼 때,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도 당시 기획실(기획실-5363호, 2023.04.03.)에서 전 부서에 시행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행정절차 이행 안내’ 문서에도 붙임1의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의회 동의 후 예산편성 하도록 안내되어 있고 민간위탁 사업이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가 없음.

따라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참고자료 2》

예산편성 전 의회 동의를 명시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③ 도지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예외로 한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내이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일회성 성격의 사무
2. 청소 · 경비 · 방호 등 연례 반복적인 사무

[전문개정 2024. 5. 10.]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④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③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4.]

《참고자료 3》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 시장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의견 19-0079, 요청기관: 강원도 원주시(회신일자 2019. 3. 21.)

1. 질의요지

시장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2.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시장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제1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원주시조례”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탁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위탁계획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원주시조례는 시장에게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 위탁 여부가 아닌 “위탁 계획” 즉 위탁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7조제1항), 이러한 위탁계획에는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등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제6조제2항), 위탁 기간 만료 후 동일한 위탁사무에 관해 동일한 수탁기관과 체결하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위탁계획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제7조제2항)을 종합해 볼 때, 위탁계획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사항들 중 변경이 발생하면 이는 기존의 계획과는 다른 “위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고,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에 비추어보면(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11 판결 참조), 원주시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제처 법제업무정보-자치입법 의견제시 사례)

- 정부의 재정건전 기조와 감세정책으로 이전재원의 감소 등 세입 여건의 전망이 밝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물가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군민의 안전과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수 증대 방안이 요구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행사비 등의 긴축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또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응 방안이며 이런 측면에서 집행률이 낮은 지방 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 본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2025년 주요 편성현황

1. [표1] 5억원 이상 편성된 예산

구 분(5억원 이상 편성예산)	예 산 액(백만원)	비고
22개부서 / 161개사업	290,819	P27

2. [표2] 1억원 이상 감액편성된 예산

구 분(5억원 이상 편성예산)	예 산 액(백만원)	비고
13개부서 / 48개사업	65,725	P33

3. [표3] 부지매입비 편성내역

구 분(부지매입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2개부서 / 2개사업	770	P35

4. [표4] 연구용역비(207-01)편성현황(1천만원 이상)

구 분(연구용역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8개부서 / 18개사업	468	P36

5. [표5] 행사(축제)성 예산(201-03, 307-04) 편성현황(1천만원 이상)

구 분(행사, 축제성 예산)	예 산 액(백만원)	비고
13개부서 / 54개사업	3,567	P38

6. [표6] 민간위탁사업(307-05, 402-03) 편성현황(1천만원이상)

구 분(민간위탁사업)	예 산 액(백만원)	비고
15개부서 / 49개사업	33,139	P40

7. [표7] 출연금 편성현황

구 분(민간위탁사업)	예 산 액(백만원)	비고
7개부서 / 9개사업	8,570	P42

[표1] 5억원 이상 편성된 예산

* 비고(예산안 사업명세서 P)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천원)	재원	비고
합계	161개 사업	290,819,351		
행정과(1)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606,136	자체	P178
기획예산과(2)	○ 군정주요시책 홍보비	800,000	자체	P197
	○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775,134	자체	p201
인재육성과(3)	○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2,550,000	자체	p207
	○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630,852	자체	p207
	○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	2,000,000	도비	p209
복지정책과 (6)	○ 국가유공자 지원	2,168,250	자체	p223
	○ 장애인연금 지원	1,359,824	국도비	p232
	○ 장애인 활동 급여지원 위탁비	967,148	국도비	p235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336,186	국도비	p235
	○ 생계급여 지원	6,812,900	국도비	p239
	○ 자활근로사업 지원	1,326,834	국도비	p241
가족복지과 (17)	○ 어르신 이미용 지원금	700,000	자체	p249
	○ 경로당 운영비 지원	699,410	도비	P251
	○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522,620	자체	p252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4,223,172	국도비	P252
	○ 공의형 일자리 사업 지원	590,092	기금	P252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1,454,705	국도비	P253
	○ 기초연금 지원	37,343,287	국도비	P254
	○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2,142,300	도비	P255
	○ 평창공설묘원 진입도로 보수공사	500,000	자체	P255
	○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524,000	자체	P256
	○ 노인여가시설 신축	500,000	자체	P256
	○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2,817,002	국도비	P264
	○ 영아 보육료 위탁비	1,061,028	국도비	P267
	○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	656,268	전액도비	P267
	○ 육아기본수당 지원	2,330,000	도비	P269
	○ 아동수당 지원	1,081,956	국도비	P270
	○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998,331	국도비	P270
관광정책과 (4)	○ 평창관광문화재단 운영비	1,295,523	자체	p302
	○ 평창관광문화재단 관광축제 사업비	1,045,000	자체	p302
	○ 평창관광문화재단 축제 위탁비	550,000	자체	p302
	○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	500,000	자체	p306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천원)	재원	비고
문화예술과 (4)	○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해행당 보수지원	520,000	국도비	p319
	○ 상원사 동종 주변 목우당 증축공사 지원	800,000	국도비	p319
	○ 상원사 관리동 건립	1,500,000	국도비	p320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운영 위탁	644,931	자체	p325
올림픽체육과 (12)	○ 평창유산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금	2,312,838	자체	p331
	○ 2024 수호랑 스포츠 캠프 지원	2,092,000	기금	p331
	○ 체육회 운영지원	742,470	자체	p333
	○ 평창FC운영지원	800,000	자체	p335
	○ 미탄 실내 골프연습장 건립	580,000	자체	p339
	○ 봉평 테니스장 개선공사	500,000	자체	p339
	○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매입	540,000	자체	p339
	○ 대관령 생활체육관 지열설비 기계설비 및 전기공사	580,000	자체	p339
	○ 대회축구장 조성	1,980,000	도비	p340
	○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2,500,000	도비	p340
	○ 평창초 수영장 개축사업 지원	963,603	자체	p341
	○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	728,290	자체	p341
경제과 (7)	○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	500,000	자체	P345
	○ 평창전통시장 지중화 위탁 사업	640,082	도비	P346
	○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998,250	도비	p349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운영 시범사업	500,000	자체	P351
	○ 마중물일자리사업 인건비	1,225,200	자체	p352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722,403	도비	P353
	○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금	800,000	자체	P691
민원토지과(3)	○ 공간자료(용도지역 · 구역) DB정비 사업	550,000	자체	p360
	○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1,070,000	자체	p361
	○ 지적재조사업 조정금	580,519	자체	P361
도시과 (5)	○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공사	500,000	자체	p369
	○ 하진부리 주차장 조성공사	550,000	자체	p370
	○ 봉평 소로2-18호 도로개설공사	550,000	자체	p370
	○ 진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400,000	자체	P370
	○ 취약계층 주거지원 임차급여	1,089,745	국도비	P374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천원)	재원	비고
건설과 (24)	○ 시특법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650,000	자체	P385
	○ 시특법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500,000	자체	P385
	○ 군도 유지보수사업	500,000	자체	p386
	○ 군도17호선 도로변 인도설치사업	900,000	자체	p386
	○ 군도3호선 다수대교 인도설치사업	500,000	자체	p386
	○ 평창교 정비	3,500,000	자체	p386
	○ 평창302호선(천동리) 확·포장사업	700,000	자체	p386
	○ 미탄205호선(다래너미길) 확·포장사업	800,000	자체	p386
	○ 대화304호선(하안미리) 확·포장사업	1,250,000	자체	p386
	○ 용평301호선(방덕골) 확·포장사업	700,000	자체	p386
	○ 진부203호선(간평2리) 확·포장사업	500,000	자체	p386
	○ 진부201호선(탑동리) 확·포장사업	500,000	자체	p386
	○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	500,000	자체	p387
	○ 소교량 가설사업	1,500,000	자체	p387
	○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1,000,000	자체	p389
	○ 소규모 공공시설(세천) 정비사업	600,000	자체	p389
	○ 평창강 유지보수사업	660,000	전체국비	p389
	○ 도·배수로 정비사업(8개읍면)	2,200,000	자체	p390
	○ 백오포1리 취입보 보수	600,000	자체	p391
	○ 서천평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247,500	도비	p391
	○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사업(8개읍면)	1,500,000	자체	p391
	○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8개읍면)	800,000	자체	p391
	○ 기계화 경작로정비 사업(8개읍면)	1,640,000	자체	p392
	○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3,600,000	군도비	p392
안전교통과 (12)	○ 풍수해 보험사업	680,152	도비	P399
	○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위탁사업	3,000,000	군도비	p402
	○ 개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84,000	군도비	p402
	○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700,000	군도비	p403
	○ 송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300,000	군도비	p403
	○ 차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00,000	군도비	p403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천원)	재원	비고
안전교통과 (12)	○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850,000	군도비	p404
	○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5,762,000	군도비	p404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607,000	도비	p409
	○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	1,823,910	도비	p410
	○ 희망택시 보상금	737,720	군도비	p411
	○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	657,000	기금	P414
산림과 (10)	○ 사방댐 신설사업	1,957,250	국도비	P420
	○ 산불진화 임도 신설사업	1,046,900	군도비	P422
	○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전기인입공사	600,000	자체	p431
	○ 평창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길 조성	976,000	기금	p432
	○ 생활밀착형 숲(실외정원) 조성	500,000	군도비	p434
	○ 국토공원화 조성사업	900,000	자체	p435
	○ 정책숲가꾸기 위탁사업	2,522,599	국도비	p437
	○ 경제림 조성 위탁사업	582,201	국도비	p438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284,898	국도비	p443
	○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802,079	도비	p446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과 (8)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825,350	국도비	p456
	○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900,000	자체	p464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금	975,000	자체	P465
	○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금	550,000	자체	P465
	○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1,100,000	기금	p466
	○ 자원회수시설 위탁금	580,000	자체	P467
	○ 강릉-평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1,115,000	자체	p467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보수	565,000	기금	P702
현안사업추진과 (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90,000	자체	p473
보건정책과(1)	○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위탁비	800,000	도비	P479
의료지원과(1)	○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지원	2,160,000	도비	P515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천원)	재원	비고
농정과(7)	○ 강원 농업인 수당	3,859,800	도비	P512
	○ 조둔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위탁사업	780,000	군도비	p533
	○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위탁사업	6,047,000	군특	p533
	○ 미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탁사업	1,571,000	군특	P534
	○ 방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탁사업	1,571,000	군특	P534
	○ 대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탁사업	1,571,000	군특	P534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540,000	국도비	p535
농산물유통과 (12)	○ 공선조직 육성 지원	550,000	자체	P540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1,612,200	기금/도비	P542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000,000	자체	P525
	○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	812,800	국도비	P544
	○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 제제 등 지원	626,600	국도비	P547
	○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	517,760	도비	p547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739,800	국도비	p550
	○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506,000	기금/도비	p552
	○ 유기질비료 지원	3,000,000	도비	P555
	○ 반값 농자재 지원	8,333,000	도비	P556
	○ 기본형 공직직접지불	10,848,000	기금	P559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094,542	도비	P559
축산농기계과(3)	○ 조사료 구입	500,000	자체	P565
	○ 살처분 보상금	625,000	국도비	p570
	○ 임대농기계 구입	600,000	자체	p.578
상하수도사업소 (18)(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 정수장 시설개선 사업	570,000	자체	p731
	○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운영대가)	7,801,465	자체	p725
	○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시설대가)	3,867,311	자체	P732
	○ 국도 42호선(여우재) 관로 이설	500,000	자체	p7321
	○ 대화4리(던짓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000,000	자체	p732
	○ 운교3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800,000	자체	p732
	○ 노동,수항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000,000	도비	P733
	○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210,000	국도비	P734
	○ 공공하수관로 및 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1,088,225	자체	p702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천원)	재원	비고
(수질개선특별회계)	○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	7,500,000	기금	p703
	○ 공공하수처리 기계설비 및 개선공사	500,000	기금	p703
	○ TMS 유지관리	500,000	기금	p703
	○ 대화진부 하수처리시설 위탁금	3,800,000	기금	p704
	○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150,000	국도비	p705
	○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8,177,000	국기도비	p705
	○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	1,067,000	국도비	p706
	○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951,000	국도비	p706
	○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022,000	국도비	p707

[표2] 1억원 이상 감액편성된 예산

* 비고(예산안 사업명세서 P)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백만원)			비고 (예산서P)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계	48개 사업	65,725	104,146	-38,414	
복지정책과(3)	장애인 활동 급여지원 위탁비	967	1,075	-108	P235(국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59	437	-178	P246(자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예탁금(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1	388	-136	P672(자체)
가족복지과(5)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1,455	1,760	-305	P253(균특)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2,142	2,380	-238	P255(도비)
	노인여가시설 신축	500	1,600	-1,100	P256(자체)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90	250	-160	P267(도비)
	부모급여 영아수당	998	1,618	-620	P270(국비)
문화예술과(2)	문화유산 긴급 보수비	30	250	-220	P318(자체)
	월정사 담장보수 지원외 2건	377	622	-245	P318(도비)
올림픽체육과(1)	2025 수호랑 스포츠 캠프지원	2,092	2,325	-233	P331(기금)
도시과(1)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	170	1,300	-1,130	P372(자체)
건설과(2)	평창강 유지보수사업	660	800	-140	P389(국비)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3,600	3,736	-136	P392(균특)
안전교통과(7)	개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84	3,463	-1,976	P403(균특)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700	8,900	-6,200	P403(균특)
	차향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00	1,260	-260	P404(균특)
	수하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시설비)	5,762	7,119	-1,359	P404(균특)
	수하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감리비)	400	1,200	-800	P404(자체)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93	240	-147	P404(도비)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백만원)			비고 (예산서P)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터미널 유지관리	50	700	-650	P410(자체)
산림과(6)	산불진화 임도신설 사업	1,046	1,254	-207	P422(균특)
	임도 안전시설물 설치	139	255	-116	P423(도비)
	장암산 하는 자연휴양림 조성	446	3,000	-2,553	P430(도비)
	정책숲가꾸기 위탁사업	2,522	3,635	-1,112	P437(국비)
	경제림 조성 위탁사업	582	891	-309	P438(국비)
	재해방지조림 위탁사업	434	637	-203	P438(국비)
환경과(13)	마을단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150	250	-100	P451(국비)
	ASF 차단 울타리 관리	30	140	-110	P453(국비)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외 2건	1,064	2,160	-1,096	P454(국비)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172	330	-157	P455(국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825	1,200	-375	P456(국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4	156	-132	P458(국비)
	방치폐기물 처리비외 2건	55	750	-695	P464(자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금	975	1,800	-825	P465(자체)
	자원회수시설 위탁금	580	1,160	-580	P467(자체)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리모델링외 5건	387	1,120	-733	P467(자체)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외 2건	559	747	-187	P468(자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322	22,900	-9,578	P470(자체)
	공공하수처리 기계설비 및 개선공사 (수질개선특별회계)	1,450	1,658	-208	P703(기금)
농정과(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보강·정비	70	863	-793	P533(자체)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백만원)			비고 (예산서P)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농산물유통과(4)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	21	514	-493	P541(기금)
	당귀명품화 토양개량제 지원외 2건	210	351	-141	P549(도비)
	유기질비료 지원	3,000	3,295	-295	P555(도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0,848	11,369	-521	P559(기금)
축산농기계과(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외 1건	370	520	-150	P565(기금)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	14	118	-104	P578(도비)
상하수도사업소(1)	급수정비공사 및 관망 선지화사업외 2건	1,350	1,650	-300	P732(자체)

[표3] 부지매입비 편성내역

* 비고(예산안 사업명세서 P)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재원	비고
합 계	2개 사업	770		
문화예술과(1)	○ 평창방림삼베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	230	자체	P326
올림픽체육과(1)	○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매입	540	자체	P339

(의결내역)

사업명	공유재산 의결시기
○ 평창방림삼베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매입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표4] 연구용역비(207-01)편성현황(1천만원 이상)

* 비고(예산안 사업명세서 P)

소관부서	용역명	예산액 (백만원)	재원	비고
합계	18개 사업	468		
기획예산과(6)	○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조사 연구용역	50	균특	P196
	○ 2026년 평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30	자체	P200
	○ 소규모 주요시책추진 용역	50	자체	P201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용역	50	자체	P201
	○ 주요재정사업 평가 용역	22	자체	P201
	○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22	자체	P201
인재육성과(1)	○ 제2차 평창군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40	자체	P216
복지정책과(1)	○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	22	자체	P224
관광정책과(4)	○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 연구 용역	10	자체	P301
	○ 축제 실행계획 수립 및 전문가 컨설팅 용역	10	자체	P307
	○ 문화관광축제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2	자체	P307
	○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	20	자체	P307
문화예술과(1)	○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연구 용역	20	자체	P325
안전교통과(1)	○ 평창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45	자체	P409
산림과(1)	○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운영계획 용역	10	자체	P431
환경과(3)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용역	15	자체	P453

소관부서	용역명	예산액 (백만원)	재원	비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평가용역	10	자체	P453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용역	20	자체	P464

[표5] 행사(축제)성 예산(201-03, 307-04) 편성현황(1천만원 이상) * 비고(예산안 사업명세서 P)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예산서P)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계	54개 사업	3,567	2,047	1,531	
행정 담당관(7)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	12	32	-20	P172(자체)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운영비	20	20	0	P173(도비)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40	28	-12	P175(자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	20	14	6	P175(자체)
	통일준비 역량함양 자문위원 위촉 지원	10	6	4	P175(자체)
	평창군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지원	15	9	6	P176(자체)
	가족 친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25	0	25	P178(자체)
기획 예산과(2)	정책토론회 개최	10	15	10	P195(자체)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행사 운영	15	25	10	P195(자체)
인재 육성과(10)	청소년 미래설계 캠프 운영	100	0	100	P207(자체)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33	38	-5	P208(자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행사비	53	35	18	P210(기금)
	창의형 인재육성 청소년 활동 행사비	40	0	40	P211(자체)
	청소년 재능발전사업 행사지원 지원	35	30	5	P213(자체)
	제2의 인생학교 운영비	20	0	20	P214(자체)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 운영비	12	0	12	P214(자체)
	평생학습축제 개최	40	30	10	P215(자체)
	늘 행복한 교실 화합 한마당 지원	15	15	0	P215(자체)
	독서진흥 행사비	24	16	8	P216(자체)
복지정책과(1)	보훈행사비	18	12	6	P222(자체)
가족복지과(2)	어린이 주간 및 어린이날 행사지원	50	20	30	P272(자체)
	드림스타트사업 행사비	15	12	3	P277(자체)
관광정책과(4)	관광홍보 행사비	30	8	22	P302(자체)
	평창관광택시 운행자 역량강화	15	0	15	P303(자체)
	돌문화체험과 활성화 특별전시회 개최 및 운영	50	0	50	P305(자체)
	축제 오프라인 행사 운영비	60	100	-40	P307(자체)
문화예술과(11)	평창예총 사업 지원	190	120	70	P312(자체)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예산서P)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체육문화과(10)	차강 박기정 작품 전시회 지원	30	0	30	P312(자체)
	문화예술 공연비	400	300	100	P313(자체)
	주요 방송사 콘서트	160	120	40	P313(자체)
	평창대관령음악제 지원	100	100	0	P315(자체)
	평창 미술 교류전	10	0	10	P315(도비)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날 운영비	50	50	0	P315(자체)
	계춘5리 깡촌음악회 운영비	10	10	0	P315(자체)
	노산문화제 지원	300	250	50	P315(자체)
	군민의 날 지원	320	320	0	P316(자체)
	아리랑 풍류한마당 공연 지원	30	20	10	P320(자체)
올림픽체육과(10)	평창올림픽 그린 레거시 투어 운영	50	0	50	P332(자체)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충회 개최지원	200	0	200	P332(자체)
	한국바이애슬론연맹 회장배 전국대회 지원	20	0	20	P335(자체)
	읍면 체육대회	160	120	40	P336(자체)
	군수배 종목별 대회 지원	71	60	11	P336(자체)
	노산문화제 체육행사 지원	25	0	25	P336(자체)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지원	260	0	260	P337(자체)
	HAPPY700평창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지원	50	0	50	P338(도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학생바둑대회 지원	30	0	30	P338(자체)
	오대산천 줄바 경연대회 지원	160	0	160	P338(도비)
경제과(2)	인정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행사비	36	36	0	P346(자체)
	장평5일장 관광콘텐츠 행사비	10	10	0	P346(자체)
안전교통과(3)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비	23	23	0	P398(국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25	25	0	P346(자체)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10	8	2	P346(자체)
보건정책과(1)	식품안전의 날 어린이인형극 행사비	10	10	0	P488(자체)
의회사무과(1)	의원 한마음 행사 운영	50	0	50	p165(자체)

[표6] 민간위탁사업(307-05,402-03) 편성현황(1천만원이상)

* 비고(예산안 사업명세서 P)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백만원)			비고 (예산서P)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계	49개 사업	33,139	23,432	11,489	
인재육성과(8)	평창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금	314	0	314	p208(자체)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위탁금	30	0	30	p209(기금)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145	70	75	p211(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금	279	230	48	P211(자체)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42	0	42	p212(기금)
	청소년 안전망 구축 위탁금	119	0	119	p212(기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128	230	49	P213(자체)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운영 위탁금	300	320	-20	P214(자체)
가족복지과(4)	종부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270	70	200	P256(자체)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114	110	3	P256(자체)
	장난감도서관 운영 위탁금	80	0	80	P267(자체)
	어린이 실내놀이터 위탁금	280	111	169	P272(자체)
세정과(1)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공급 위탁금	44	44	0	P289(자체)
관광정책과(1)	평창관광센터 운영 위탁금	88	120	32	P301(자체)
문화예술과(2)	HAPPY700 평창시네마 위탁금	150	146	4	P313(자체)
	백룡동굴 가이드 운영 위탁금	645	645	0	P325(자체)
올림픽체육과(1)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운영 위탁금	90	180	-90	P332(자체)
경제과(1)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금	800	800	0	P691(자체)
도시과(3)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위탁금	365	0	365	P372(자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위탁금	10	10	0	P372(자체)
	현수막지정제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정비 위탁금	25	25	0	P372(자체)
안전교통과(3)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위탁금	100	0	100	P410(자체)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	657	542	115	P427(기금)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	70	85	-15	P427(국비)

산림과(5)	정책 농 가꾸기 위탁사업	2,522	3,635	-1,112	P437(국비)
	경제림 조성 위탁사업	582	892	-309	P438(국비)
	재해방지조림 위탁사업	435	638	203	P438(국비)
	공익림 가꾸기 위탁사업	54	54	0	P438(국비)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437	0	437	P440(국비)
환경과(7)	한강시원지 체험관 위탁금	300	300	0	P459(자체)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 사업	14	19	-5	P463(도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금	975	1,800	-825	P465(자체)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금	550	500	50	P465(자체)
	자원회수시설 위탁금	580	1,160	580	P467(자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	7,500	6,000	1,500	P703(기금)
	대화·진부 하수처리시설 위탁금	3,800	3,500	300	P704(자체)
보건정책과(3)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금	67	67	0	P480(기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금	10	10	0	P488(자체)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금	145	119	27	P488(국비)
농정과(3)	시군역량강화 위탁금	400	400	0	P533(균형)
	봉평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50	72	-22	P533(자체)
	평창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금	10	10	0	P534(자체)
농산물유통과(6)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위탁금	100	0	100	P540(자체)
	공선조직 육성지원	550	0	550	P540(자체)
	조합공동사업법인 판촉 및 홍보	35	0	35	P540(자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위탁금	50	50	0	P543(자체)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위탁금	288	263	25	P546(자체)
	반값 농자재 지원	8,333	0	8,333	P556(자체)
축산농기계과(1)	공동방제단 위탁사업	207	205	2	P568(자체)

[표7] 출연금(306-01) 편성현황

* 비고(예산안 사업명세서 P)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재원	비고
합계	9개 사업	8,570		
기획예산과(1)	○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출연금	50	자체	P195
인재육성과(1)	○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2,550	자체	P207
세정과(1)	○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5	자체	P287
관광문화과(3)	○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30	자체	P302
	○ 평창관광문화재단 운영비	1,296	자체	P302
	○ 평창관광문화재단 관광축제 사업비	1,045	자체	P302
문화예술과(1)	○ 평창관광문화재단 문화예술 사업비	281	자체	P315
올림픽체육과(1)	○ 평창유산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금	2,313	자체	P331
농산물유통과(1)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000	자체	P544

V.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호~11호(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